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4. 30(수)

문화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4. 08

나. 제안자 : 강병수 의원(대표발의)

- 박승희,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재병, 정수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4. 08

라. 상정일자 : 2014. 4. 30 (제21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강병수 의원

○ 검토보고 :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인천시민의 문화적 성숙과 최적의 인천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운영비 재원에 대한 제한과 지원 조항의 미비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문화재단 수익사업 범위와 운영재원 조성방법을 현실화하고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문화재단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수익금을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토지 등 현물을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수익금 증대 도모(안 제7조)
- “기본재산 운용수입금”과 “특정사업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을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타시도와 같이 시장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안배경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등을 기본재산에 포함하여 운용기금의 재원확보 증대를 도모하고, 최근 재단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 및 기금 조성 부진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 수익사업 관련(안 제5조)

안 제5조는 당초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운영비에도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sup>1)</sup>

현 행	개정안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익사업) ----- <u>설립목적의</u> ----- ----- ----- -----.

### ○ 수익사업 및 기본재산 관련(안 제5조 및 안 제7조)

안 제7조는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으로 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등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시에서 2013년 출연한 재단청사 및 문학관을 기본재산에 반영하는 등 기본재산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 재단에 운영비 지원 등(안 제9조 및 안 제11조)

안 제9조는 운용기금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1) 재단의 수익사업은 2012~2013년도 수입 현황(각 1천만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로 출판물(책) 발간 수입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기부·보조·출연 및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은 동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운영비 지원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먼저, 동 조례안에서 인천문화재단에 사업비 외에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자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적립기금이자	2,196	1,604	1,395
기금법인세 환급금	365	357	220
위탁수수료 등	229	317	163
계	2,790	2,278	1,778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 자원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 기금법인세 환급금, 위탁 수수료 등이 있으며, 이중 적립기금 이자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의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직원수는 설립당시 17명 보다 2014년 기준 34명(현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적립기금의 이자율은 최고 6.18%(2008~2009년)에서 2014년 3.15%로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2005~2014 인천문화재단 기금 및 직원현황〉

연도	기금(백만원)	기금이율(%)	기금이자(천원)	시비보조(천원)	직원규모(명)
2005	41,242	4.93	1,191,571	1,300,000	17
2006	44,867	5.06	1,626,106	1,400,000	
2007	45,991	5.80	1,889,891	2,500,000	22
2008	48,207	6.18	2,358,949	3,200,000	25
2009	48,331		2,151,200	3,700,000	
2010	50,510	5.15	2,193,934	3,700,000	29
2011	50,709		2,237,394	3,300,000	30
2012	51,261		2,195,973	2,272,000	32
2013	51,541		3.15	1,604,565	1,925,000
2014	51,541	1,395,291		1,653,000	

한편, 2004년 12월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설치하였으며 기금은 적립기금<sup>2)</sup>과 운용기금으로 구성됨. 이중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 매년 10~30억원을 지원했던 출연금이 인천시의 재정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2011년부터는 현저히 감소(1억원)하고 있음.

2) 기금 적립현황 : 51,541백만원('13.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총계	51,541	39,573	1,669	3,625	1,124	2,216	124	2,179	199	552	279
시	소계	49,416	39,573	1,050	3,000	1,000	2,042	2,000	100	458	193
	출연금	48,873	39,573	1,000	3,000	1,000	2,000	2,000	100	100	100
	예금이자	92		50			42				
	사업비잔액	451								358	93
	기부금	2,125		619	625	124	174	124	179	99	94

결국,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 이자율 하락과 직원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단에 사업비 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참고로, 최근 제정(2014. 7. 29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3)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역문화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유도하고 지원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지자체	조항	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설립비용, - , 사업비
서울특별시		- , 운영비, 사업비
부산광역시		출 연 금, 비 용
대구광역시		설립비용, 운영비, 사업비
대전광역시		설립비용, 운영비, 사업비
광주광역시		설립비용, 운영비, 사업비
경 기 도		- , 운영비, 사업비
충청북도		- , 운영비, -
충청남도		설립비용, 운영비, 사업비
전라북도		설립비용, 운영비, 사업비

#### 3)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 소관부서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허용되면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비는 축소되고 운영비 증액이 예상되어 당초 재단의 목적사업이 위축되고 조직인력의 확대, 임금 상승 등이 우려되어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하고, 「문화기본법」 제정<sup>4)</sup>에 따라 시행되는 문화영향평가에 문화재단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4)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 신현환, 제갈원영 위원

-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적립기금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인데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문화재단의 목적사업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보다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그동안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무엇인지?

##### < 답 변 >

###### ○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

- 기금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시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모사업, 출판물 발간 등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 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인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3년 시가 출연한 재단청사 및 문학관을 기본재산에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등을 기본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박승희, 신현환, 강병수, 안영수 위원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산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을 “설립목적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기본재산의 조성)”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제9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을 “운영비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u>제4조에</u> <u>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u> <u>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u> <u>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u> 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5조(수익사업) ----- <u>설립목적</u> <u>의</u>----- ----- ----- -----.</p>
<p>제7조(<u>기본재산의 조성</u>) (생략) <u>&lt;신설&gt;</u></p>	<p>제7조(<u>기본재산</u>)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u> <u>다.</u> 1. <u>기금</u> 2.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u> <u>연한 현물</u> 3. <u>그 밖의 현물</u></p>
<p>제9조(<u>기금의 조성</u>) ① <u>적립기금</u> 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 3. (생략) 4. <u>기타 수입금 등</u> ② (생략) ③ <u>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u> <u>원으로 한다.</u> 1. (생략) 2. <u>기금의 이자 수입금</u></p>	<p>제9조(<u>기금의 조성</u>)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기본재산 운용수입금</u></p>

<p>3. <u>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u></p> <p>4. <u>기타 수입금 등</u></p> <p>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 설립비용 및 <u>제10조제1항제2호</u> 및 <u>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비</u>를 지원 할 수 있다.</p>	<p>3. <u>기부금</u></p> <p>4. <u>그 밖의</u> ----</p> <p>제11조(재정지원) -----</p> <p>-----</p> <p>---- <u>운영비와</u> -----</p> <p>-----</p> <p>--.</p>
---	--